신남방

싱가포르 SINGAPOR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445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458
03. 비관세장벽 현황 461
04. 수출 애로사항 468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470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싱가포르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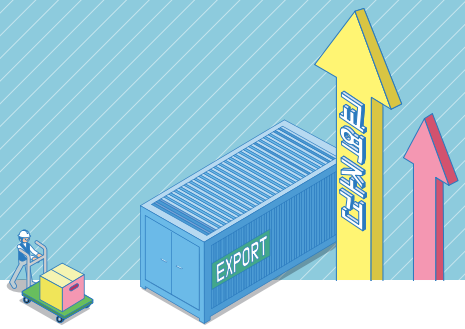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 2)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년 식품 시장규모는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1,000억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 품목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임
  - 신선식품 시장은 2022년 기준 69억 달러(한화 약 9조 128억 원)임
    * 육류는 36억 달러(한화 약 4조 7160억 원)를 형성하며 전체 36.0% 비중을 차지
    * 뒤이어 낙농품(10.9%), 채소류(10.7%), 과일 및 견과류(9.1%)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31억 달러(한화 약 4조 872억 원)로 집계됨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100억 원)로 전체 10.3%를 차지하며, 스낵류(9.1%), 편의식품(5.6%) 순으로 나타남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9.2	9.5	9.6	9.6	10.0	100.0	4.0
신선식품	6.2	6.4	6.5	6.6	6.9	68.8	4.2
– 육류	3.0	3.1	3.3	3.4	3.6	36.0	5.0
– 낙농품	1.0	1.1	1.1	1.1	1.1	10.9	3.8
– 채소류	1.1	1.1	1.1	1.0	1.1	10.7	3.9
– 과일 및 견과류	0.9	0.9	0.9	0.9	0.9	9.1	3.4
– 유지류	0.2	0.2	0.2	0.2	0.2	2.1	0.0
가공식품	3.1	3.1	3.0	3.0	3.1	31.2	3.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0	1.0	1.0	1.0	1.0	10.3	2.0
– 스낵류	0.9	0.9	0.9	0.9	0.9	9.1	3.4
– 편의식품	0.6	0.6	0.6	0.5	0.6	5.6	3.7
– 소스 및 향신료	0.2	0.2	0.2	0.2	0.2	2.3	4.5
– 영유아용 식품	0.1	0.1	0.1	0.1	0.1	1.4	7.7
– 펫푸드	0.1	0.1	0.1	0.1	0.1	1.3	8.3
– 스프레드 및 당류	0.1	0.1	0.1	0.1	0.1	1.2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600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함
  - 연령대별 인구 수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35.0% 비중으로 높으며, 14세 이하 인구 수의 비중(8.3%)이 적음
  - 여성 인구 수는 290만 명(약 48.3%), 남성 인구 수는 310만 명(51.7%)으로, 남성 인구의 비중이 여성 인구보다 높음
- 2022년 가구 수는 19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만 3,400달러(한화 약 3,065만원) 규모임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1년 대비 9.35% 증가함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약 6.0%의 비중이며, 전년 대비 7.7% 증가함
-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684.9달러(한화 약 220만원)로 나타남
  - 신선식품 소비액은 1,158.5달러(한화 약 151만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68.8%를 차지함
    * 육류 소비액은 605.5달러(한화 약 79만원)로 35.9% 비중을 차지하며 품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함
    * 뒤이어 낙농품(10.9%), 채소류(10.7%), 과일 및 견과류(9.1%), 유지류(2.1%) 순으로 집계됨
  - 전체 31.2%를 차지하는 가공식품 소비액은 526.4달러(한화 약 69만원)로 나타남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은 173.9달러(한화 약 22만원)로 10.3% 비중을 차지함
    * 이어서 스낵류(9.1%), 편의식품(5.6%), 소스 및 향신료(2.3%), 영유아용 식품(1.3%) 순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601.7	1,626.1	1,634.2	1,630.9	1,684.9	100.0	3.3
신선식품	1,071.0	1,094.0	1,113.4	1,119.0	1,158.5	68.8	3.5
– 육류	514.9	535.6	565.6	581.1	605.5	35.9	4.2
– 낙농품	180.6	182.3	180.0	178.2	184.1	10.9	3.3
– 채소류	183.1	183.4	179.4	175.4	180.2	10.7	2.7
– 과일 및 견과류	154.6	155.1	151.9	148.8	152.8	9.1	2.7
– 유지류	37.8	37.6	36.5	35.5	35.9	2.1	1.2
가공식품	530.7	532.1	520.8	511.9	526.4	31.2	2.8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9.5	179.5	175.3	171.1	173.9	10.3	1.6
– 스낵류	156.0	156.2	152.6	148.8	153.4	9.1	3.1
– 편의식품	95.8	95.9	93.8	91.6	94.8	5.6	3.5
– 소스 및 향신료	38.7	38.9	38.2	37.5	38.6	2.3	3.2
– 영유아용 식품	21.3	21.4	21.7	22.3	22.7	1.3	2.1
– 펫푸드	14.8	16.8	17.5	20.1	22.0	1.3	9.5
– 스프레드 및 당류	24.5	23.4	21.8	20.6	20.9	1.2	1.6

* 출처 : STATISTA

- 신선식품 중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77.1㎏으로 가장 높음
  * 뒤이어 육류 소비량이 60.8㎏, 낙농품 소비량은 52.3㎏으로 집계됨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소비량이 54.3㎏으로 가장 높음
  * 뒤이어 스낵류 16.9㎏, 편의식품 13.2㎏, 펫푸드 7.2㎏, 소스 및 향신료 6.9㎏ 순으로 집계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84.5	84.6	83.4	77.7	77.1	-0.8
	- 육류	53.9	57.1	61.7	59.7	60.8	1.9
	- 낙농품	56.2	56.5	56.1	52.5	52.3	-0.4
	- 과일 및 견과류	40.2	39.8	39.0	36.2	36.0	-0.4
	- 유지류	5.7	5.6	5.5	5.0	4.9	-2.6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61.2	61.0	59.8	55.3	54.3	-1.8
	- 스낵류	18.8	18.8	18.4	17.0	16.9	-0.5
	- 편의식품	14.5	14.5	14.2	13.2	13.2	-0.1
	- 펫푸드	6.7	6.9	6.5	6.8	7.2	5.7
	- 소스 및 향신료	7.4	7.4	7.4	6.9	6.9	0.1
	- 스프레드 및 당류	7.6	7.3	6.8	6.1	6.0	-2.0
	- 영유아용 식품	0.7	0.7	0.7	0.7	0.7	1.4

* 출처 : STATISTA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농식품 수출액은 146억 5,429만 달러(한화 약 19조 1,971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2.0% 증가함
  - 주요 수출국은 미국(28.1%), 말레이시아(7.8%), 중국(7.2%) 순임
    * 미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41억 1,648만 7,000달러(한화 약 5조 3,926억 원)로 집계됨
    * 2위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1억 3,744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4,901억 원)로, 전년 대비 24.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對한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7% 증가한 2억 6,135만 1,000달러(한화 약 3,424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8%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3,269,478	13,706,374	12,807,272	14,362,948	14,654,296	100.0	2.0	2.5
1	미국	3,099,305	3,120,322	3,551,791	3,877,951	4,116,487	28.1	6.2	7.4
2	말레이시아	1,097,149	949,700	836,640	911,423	1,137,447	7.8	24.8	0.9
3	중국	725,264	800,837	1,026,579	1,327,921	1,055,553	7.2	-20.5	9.8
4	일본	866,913	901,554	845,338	945,546	968,697	6.6	2.4	2.8
5	인도네시아	613,683	595,554	638,686	785,415	912,111	6.2	16.1	10.4
6	태국	876,353	924,608	865,770	846,544	911,296	6.2	7.6	1.0
7	베트남	1,329,138	1,369,590	869,395	1,055,430	825,186	5.6	-21.8	-11.2
8	호주	864,596	819,410	753,983	836,543	823,275	5.6	-1.6	-1.2
9	필리핀	534,143	543,933	554,641	640,204	708,907	4.8	10.7	7.3
10	홍콩	495,446	524,061	351,069	516,888	432,866	3.0	-16.3	-3.3
12	한국	208,835	234,070	182,919	195,436	261,351	1.8	33.7	5.8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조제식료품(46.5%)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며 다양한 주종(酒種)을 수출하고 있음
  * 조제식료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68억 1,003만 5,000달러(한화 약 8조 9,211억 원)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4% 성장함
  * 포도주, 위스키류, 맥아 추출물 기타 품목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3,269,478	13,706,374	12,807,272	14,362,948	14,654,296	100.0	2.0	2.5
1	조제식료품	4,754,049	5,173,579	5,798,884	6,430,706	6,810,035	46.5	5.9	9.4
2	포도주	1,099,072	1,153,501	855,597	1,248,331	949,738	6.5	−23.9	−3.6
3	위스키류	894,676	921,913	696,246	779,825	838,294	5.7	7.5	−1.6
4	맥아 추출물 기타	1,163,082	1,152,438	683,868	527,617	611,975	4.2	16.0	−14.8
5	발포성 포도주	388,001	403,369	272,185	421,903	413,753	2.8	−1.9	1.6
6	초콜릿	195,146	212,110	189,548	224,291	225,641	1.5	0.6	3.7
7	초콜릿 조제품 기타	138,538	155,014	162,058	170,680	196,438	1.3	15.1	9.1
8	맥아 추출물	233,014	225,001	291,162	240,457	193,820	1.3	−19.4	−4.5
9	포도주(2L 이하)	113,416	111,218	94,567	173,222	158,182	1.1	−8.7	8.7
10	우유	103,966	120,234	106,764	112,062	145,888	1.0	30.2	8.8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2022년 수입액은 166억 7,167만 2,000달러(한화 약 21조 8,399억 원)로 전년 대비 8.7% 증가함
  - 말레이시아(16.2%), 프랑스(10.1%) 중국(9.8%) 순으로 집계됨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27억 738만 2,000달러(한화 약 3조 5,467억 원)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함
    * 프랑스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하며 16억 8,127만 4,000달러(한화 약 2조 2,025억 원) 수입되었으며,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보임
    * 중국산 수입액은 16억 4,154만 4,000달러(한화 약 2조 1,504억 원)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함
  - 한국산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1.3%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3.6%가 감소한 2억 2,237만 4,000달러(한화 약 2,913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14.1%의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777,756	12,754,714	13,074,158	15,342,003	16,671,672	100.0	8.7	6.9
1	말레이시아	1,969,657	1,965,654	1,987,549	2,322,088	2,707,382	16.2	16.6	8.3
2	프랑스	1,536,235	1,480,514	1,268,900	1,724,340	1,681,274	10.1	−2.5	2.3
3	중국	1,007,836	1,101,759	1,196,229	1,406,933	1,641,544	9.8	16.7	13.0
4	미국	957,002	1,090,540	1,310,107	1,483,829	1,614,586	9.7	8.8	14.0
5	호주	904,064	762,264	990,187	1,221,922	1,175,396	7.1	−3.8	6.8
6	인도네시아	906,611	869,437	920,961	1,105,699	1,160,735	7.0	5.0	6.4
7	영국	738,961	704,809	664,144	718,476	815,879	4.9	13.6	2.5
8	태국	609,116	623,353	682,689	672,985	734,945	4.4	9.2	4.8
9	브라질	424,851	433,666	492,582	507,262	662,659	4.0	30.6	11.8
10	뉴질랜드	487,980	461,902	483,847	561,654	620,190	3.7	10.4	6.2
15	한국	131,188	181,857	167,773	257,441	222,374	1.3	−13.6	14.1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포도즙 증류주(5.2%), 소의 지방 기타(4.5%), 조제식료품(4.5%) 등이 있음

  * 포도즙 증류주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8억 6,944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1,390억 원)이며, 소의 지방 기타의 수입액은 201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67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7억 5,453만 6,000달러(한화 약 9,884억 원)를 기록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777,756	12,754,714	13,074,158	15,342,003	16,671,672	100.0	8.7	6.9
1	포도즙 증류주	868,984	846,461	702,487	960,153	869,441	5.2	−9.4	0.0
2	소의 지방 기타	205	262	477,562	604,335	754,536	4.5	24.9	678.9
3	조제식료품	490,716	609,801	648,132	750,724	750,922	4.5	0.0	11.2
4	위스키류	671,355	634,198	568,266	621,071	737,414	4.4	18.7	2.4
5	포도주(2L 이하)	289,811	273,532	273,597	443,741	439,092	2.6	−1.0	10.9
6	발포성 포도주	363,661	342,792	262,040	403,019	399,655	2.4	−0.8	2.4
7	절단한 냉동 닭고기	201,243	214,781	226,481	209,452	348,587	2.1	66.4	14.7
8	빵 기타	190,454	194,156	199,544	232,524	244,804	1.5	5.3	6.5
9	코코아두	213,485	216,230	227,346	263,430	234,761	1.4	−10.9	2.4
10	냉장 돼지고기	200,778	192,174	256,824	245,177	231,305	1.4	−5.7	3.6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한국의 對싱가포르 농식품 수출현황

- 2022년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1억 6,122만 8,000달러(한화 약 2,112억 원)로 집계됨
  - 농산물 수출액이 1억 3,490만 5,000달러(한화 약 1,767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83.7%를 차지함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동식물성 유지 기타(13.2%), 조제식료품 기타(9.4%), 신선 딸기(6.3%) 등이 있음
    * 동식물성 유지 기타는 2,507만 달러(한화 약 328억 원)로 전년 대비 48.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137.6% 성장함
    * 조제식료품 기타와 신선 딸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6.2%, 20.8%의 감소세를 기록함
    * 라면의 수출액은 856만 3,000달러(한화 약 112억 원)로 전년 대비 6.8%의 감소율을 보임
    * 혼합조미료는 613만 6,000달러(한화 약 80억 원)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지만, 연평균 9.5% 성장률을 보임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34,377	143,962	165,965	177,885	161,228	100.0	−9.4	4.7
농산물	108,525	119,443	143,471	154,286	134,905	83.7	−12.6	5.6
축산물	21,043	18,953	17,174	21,319	23,906	14.8	12.1	3.2
임산물	4,809	5,566	5,320	2,280	2,417	1.5	6.0	−15.8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34,377	143,962	165,965	177,885	161,228	100.0	−9.4	4.7
1	동식물성 유지 기타	–	–	2,024	16,861	25,070	13.2	48.7	2,137.6
2	조제식료품 기타	7,426	12,725	20,899	21,326	17,862	9.4	−16.2	24.5
3	신선 딸기	11,236	13,740	14,040	15,047	11,910	6.3	−20.8	1.5
4	라면	7,875	6,844	9,374	9,192	8,563	4.5	−6.8	2.1
5	혼합조미료	4,271	6,958	5,472	6,575	6,136	3.2	−6.7	9.5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싱가포르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수입업체 및 식품 등록	• 싱가포르 수입업체는 싱가포르 식품청에 무역 라이선스 취득 및 등록 필요 • 육류, 달걀 수입 시 생산업체는 사전에 싱가포르 식품청에 식품등록 필요	싱가포르 수입업체
수입신고	•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으로 제반서류를 싱가포르 세관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상업송장 ② 선하증권 ③ 포장 명세서 ④ 화물통관 허가서 ⑤ 원산지 증명서(필요 시) ⑥ 검역증명서(필요 시) 등	싱가포르 수입업체
관세 납부	•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 시 무관세가 적용되나, 주류의 경우 관세 납부 • Inter-Bank GIRO를 통해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	싱가포르 수입업체
수입검사	• 싱가포르 식품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입식품 검사 신청 • 수입검사 시행 시 화물통관 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상 제품 등 제출 필요	싱가포르 수입업체
물품 반출	•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 반출 가능	싱가포르 수입업체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싱가포르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싱가포르 수출 시 한-싱가포르 및 한-아세안 FTA 또는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한-아세안 FTA 활용 시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수출신고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싱가포르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싱가포르 수입업체가 수출검역을 요구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싱가포르 수입통관·검역 절차

수입업체 등록 및 수입허가 취득	● 수입자는 수입업체 등록 및 수입허가 취득 필요 -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 라이선스 취득 또는 등록이 필요함 - 육류, 달걀 수입 시 수출의향서 제출 후 ① 1차 서류 심사 ② 2차 현지심사를 거쳐 식품청에 식품을 등록해야 함 - 수입요건 확인 후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수입신고	● 싱가포르 수입신고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함 - 전자통관시스템(Trade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컨테이너 화물과 비컨테이너 화물을 구분하여 수입신고함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table>
<tr><td>수입신고</td><td>

싱가포르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상업송장
② 선하증권
③ 포장 명세서
④ 화물통관 허가서
⑤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⑥ 검역증명서(필요 시)

</td></tr>
<tr><td>관세 납부</td><td>

● 일반적으로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일부 항목에서의 관세 납부 필요

- 일반적으로 주류 등을 제외한 식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나,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납부해야 함
- Inter-Bank GIRO를 통해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함

</td></tr>
<tr><td>수입검역</td><td>

●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이 수입검사 대상에 해당

- 싱가포르 식품청의 온라인 시스템(SFA Inspection & Laboratory e-services)을 통해 수입식품 검사 신청이 가능함
- 식품 검사 시 화물통관 허가증, 건강증명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상 제품 등을 제출해야 함
- 검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경우에 따라 수출이 중지될 수 있음
- 2015년부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모든 신선란은 최소 검사 1일 전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싱가포르 식품청은 위생증명서 요구 등 품목별 수입 요건을 규정

- 육류의 경우 식품청이 승인한 국가 및 시설에서만 수입하고 있으며 육류 수입 시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음
- 계란류의 경우 승인된 시설 및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며 수입일 7일 이내에 발급된 위생증명서 첨부를 요구함
- 신선 농산물의 경우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허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입 가능함
- 식수, 유아용 시리얼 및 조제분유, 가공 과일 및 채소 등의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국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하에 제조되어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위생증명서, 수출증명서, 제조공장 면허 등을 요구할 수 있음

</td></tr>
<tr><td>물품 반출</td><td>

●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가

</td></tr>
</table>

FTA 체결현황

싱가포르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EU,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호주, 코스타리카, 요르단, 스리랑카, 튀르키예, 영국, US, CPTPP, EFTA, GCC, TPSEP, ASEAN, RCEP (ASEAN) (발효 및 서명)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RCEP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태평양동맹 (PA)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감(단감), 감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망고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 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묘목류 : 딸기묘

  * 주요 신선 · 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 단, 재배매체(코코피트, 펄라이트 등) 사용 시 아래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
    "재배매체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식물기생선충이 없음 또는 살선충제를 처리하였음"

  * 재배매체만 수출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식물기생선충이 없음"을 부기 또는 소독처리

  * 종자 및 묘목류의 경우, 싱가포르 식물검역당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전 수입업체에 확인 필요

• 축산물

- 멸균 식육가공품

  * 對싱가포르 수출육류작업장 등록 필요(수출 희망 가공장은 식약처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열처리 돈육(멸균 제품 제외)

  * 열처리 돈육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식품청이 승인한 도축장에서 생산된 원료육을 사용하여야 함

  * 검역시행장 지정 필요

  * 수출작업장(도축, 가공장)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승인 필요

- 수출가공장 : 신청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 수출도축장 : 신청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

---

3)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2. 수출 불가능 품목

• 축산물

-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 2023년 12월 3일 기준,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HPAI 발생 관련)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Giant store(싱가포르)
업체 유형	과일, 농산물 유통업체
담당자명	Ms Tanya Dao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싱가포르는 채소류 중 콩나물, 고구마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한국 농산물에 익숙함
  - 한국산 가공식품 중에서 불고기, 김치, 떡볶이가 가장 많이 수입됨. 김치는 싱가포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싱가포르 사람들이 식사 시 자주 즐길 정도로 선호도가 높음

- 수입 시 애로사항 및 현지 식품 관련 이슈
  - 싱가포르에서 타국 식품 수입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첨가물 및 유해 물질 검출, 식품업계 종사자의 위생 의식 부족, 불법수입 등이며, 최근 검사 과정에서 많은 회사가 신선식품과 가공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계란의 수입을 위한 수의학적 조건을 2021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 기구)에서 채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관련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힘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해 식용 계란 및 저온살균된 난류의 수의학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은 냉장 가금류의 수입 촉진을 위해 냉장 가금류의 수입 촉진을 위해 냉장 가금류 및 냉장 가금 식품에 관한 제품 포장 및 유통기한 관련한 수출업자의 의무사항 및 수출국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자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트랜스지방으로 여겨지는 수소화된 오일(PHOs)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2021년 6월부터 금지함

- 싱가포르 식품청(SFA)는 2020년 초 발표된 식품 판매 규정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삭제 또는 덧붙이거나 식품첨가물, 색소 물질, 제품별 허가된 감미제(Sweetening agents)의 목록을 수정한 개정안을 2023년 4월에 발표하여 시행 중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limits/limits-for-incidental-constituents-in-food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limits/limits-for-food-additives
미생물 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regulatory-limits/limits-for-incidental-constituents-in-food

통보문 개정현황(2023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 [4)]

주요 TBT 내용

-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건강진흥원(HPB)은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Nutri-Grade"영양 표시 체계를 도입(2022.12.30)

  * 2021년 식품(개정 제2호) 규정 개정 후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

  - Nutri-Grade 마크는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음료 제품의 영양 등급을 "A", "B", "C". "D"의 4단계로 나누고, "C" 또는 "D" 등급을 받은 Nutri-Grade 음료는 "Nutri-Grade"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D" 등급을 받은 Nutri-Grade 음료의 경우, 광고가 금지되며, Nutri-Grade 라벨 표시 제도 및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Nutri-Grade 음료에는 영향 정보 패널(NIP)도 표시해야 함
  - 해당 라벨 표시 제도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

- "Nutri-Grade"라벨 표시 제도의 적용 범위 확장(2023.12.30)

  - 2023년 12월 30일부터 싱가포르 소매점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음료, 자동 음료 디스펜서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음료(설탕·크리머를 선택할 수 있는 커피머신 등)에까지 적용됨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선포장 식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개정함

  - 최대 표면적이 10cm^2 미만인 선포장 식품은 라벨에 일부 정보 표시가 면제됨
  - 식품 생산 공장 및 생산 로트 식별을 위한 로트 번호,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선포장 제품일 경우 원산지 병기 필요

---

4)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신규 규정 12A 추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광고 또는 판매되는 식품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식품명 ▲성분 목록(타르트라진 및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 포함) ▲순함량 및 고형량 ▲식품의 싱가포르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출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명 ▲ 식품의 사용 또는 취급 지침 등)
- 개정된 규정은 2022년 9월 8일 통보 및 시행됨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식품 규정에서 식품에 대한 59개의 식별 기준 삭제와 관련한 식품 규정의 개정안을 2022년 10월 WTO에 통보함
- 수입 및 수출 식품에 대한 규제를 단순화해 타 국가들과의 식품 무역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식품 관련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food-information/labelling-packaging-information/labelling-guidelines-for-food-importers-manufacturers
"Nutri-Grade" 라벨 표시 제도에 대한 Q&A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legislation/sale-of-food-act/response-to-comments-received-from-the-public-consultation-on-labelling-and-advertising-requirements-for-nutri-grade-beverages.pdf?sfvrsn=b4dcc344_2."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필수 표기사항 (항목)	• 식품명 • 원재료명 • 용량 • 원산지 •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정보	라벨 선택 표기사항 (항목)	• 유통기한 • 영양정보 패널 • 추천 사용방법 • 영양 강조표시 및 건강 강조표시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영어로 표기할 것
		• 영어로 표기된 정보와 어긋나지 않으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외국어 병기 가능함
	제품명	• 소비자에게 식품의 실제 특징을 알려주기 위하여 식품의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설명을 라벨에 명시
		• 브랜드 이름, 상표 이름, 복잡한 이름, 판매 이름, 또는 영어가 아닌 이름은 위의 상품 설명에 포함되지 않음
	원재료명	• 사용된 모든 성분 목록을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표기
		• 혼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 뒤에 함유원료들을 나열할 것
		• 아스파탐을 함유하는 제품은 '페닐케톤뇨제 : 페닐알라닌을 함유함 (PHENYLKETONURICS : CONTAINS PHENYLALANINE)'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경고를 명시해야 함
	알레르기 정보	•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contain(포함함)'이라는 설명을 이용하여 제품의 라벨에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기함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갑각류 및 갑각류 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어류 및 어류 제품, 땅콩·대두 및 그 제품,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10mg이상 농축물
	용량	• 순중량(절대값)으로 표기
		• 액체 식품의 경우 부피(ml, l)로, 고형 식품의 경우 무게(g, kg)로 표기
		•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 그리고 통조림과 같이 액체로 포장된 식품의 경우 순중량 및 배출된 식품의 중량도 표기해야 함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정보	• 수입 제품의 경우 현지 수입업자, 유통업자 혹은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필수적으로 표기
	원산지	• 수입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필수임
		• 원산지와 함께 수출국의 제조업체, 포장업체 등의 이름과 주소 표기
	유통기간 유통기간	• 부패하기 쉽거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제품, 오염되기 쉬운 제품, 유아용 식품 등 특정 사전포장 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
		• 최소 3mm 이상의 글씨로 영구적으로 표시되거나 양각되어 있어야 함
	사용방법	• '레시피(Recipe)' 또는 '추천 사용방법(Serving Suggestion)' 등의 단어를 이용하여 사전 포장제품의 조리법, 사용방법, 그림 설명 등을 라벨에 포함할 수 있음
	영양정보 패널	• 영양 또는 건강 강조표시를 포함한 제품인 경우 필수
		• 100g(액체의 경우 100ml) 또는 제품 1회 제공량 당 식품의 영양소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영양 강조표시 또는 건강 강조표시의 대상이 되는 영양소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소금, 나트륨, 칼륨, 또는 이들 중 두가지 이상에 대한 영양 강조표시를 포함하며 그 외 다른 영양소에 대한 영양 강조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나트륨 및 칼륨 이외의 영양소에 대한 언급은 생략 가능
	영양정보	• 식품에 대한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는 반드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검증 가능해야 함
		• '고섬유질', '저지방', '무설탕' 등은 식품에 영양적 특성이 있을 때 표시하는 것임
	기타	• 치료 또는 예방 조치를 위한 사용, 한 사람의 의학적 조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상태를 예방, 완화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식품 섭취로 건강이나 신체 상태가 개선된다는 내용은 금지됨

* 자료 : 싱가포르 식품청(SFA)

• 인스턴트 커피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올드 타운 커피
원재료명	- 크리머 [포도당시럽,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팜, 커널 올레인, 카세인나트륨(우유 추출), 안정제(인산수소이칼륨, 폴리인산나트륨), 고결방지제(규소 이산화물), 유화제(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의 디글리세리드)], - 인스턴트 커피(16%) - 말토덱스트린 - 코코아 파우더 - 안정제 - 고결방지제 - 유화제
알레르겐 주의 성분	우유 및 유제품 함유
내용량	352g(13 스틱 x 25g)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포장지 표시(일/월/년)
저장방법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
제조지(원산지)	말레이시아
제조사	WHITE CAFE SDN. BHD.
수입 업체	JACOBS DOUWE EGBERTS RTL SCC SG PTE. LTD.
영양성분 정보	1회 제공량 25g(1스틱)

열량(Kcal)	118kcal
단백질	1.3g
지방	5.6g
포화지방	4.9g
콜레스테롤	0mg
탄수화물	15.1g
총 설탕	1.0g
식이섬유	1.1g
나트륨	39mg

• 닭가슴살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베타그로 부드러운 닭가슴살
원재료명	닭가슴살, 간장 마늘과 로즈마리(말토덱스트린, 전분, 마늘, 소금, 설탕, 로즈마리, 파슬리 플레이크, 효모 추출물, 변성 전분, 양파, 천연 케어링, 후추, 파프리카, INS 500(ii), INS 551, INS 415), 변성 전분, 감미료, 간장 페이스트, 소금, 산도 조절제(INS 262(i), INS 365, INS 260), 감미료(NS 640), 설탕, INS 621, D-자일로스, INS 325, INS 551
내용량	90g
유통기한	Exp 09/08/2023(일/월/연도)
저장방법	0-4℃에서 냉장 보관 유지
원산지	태국
제조사	BETAGRO MF DELI Co. Ltd.
수입자	CS Tay foods Pte Ltd.
영양성분 정보	제공량 90g당

열량(kcal)	108kcal
단백질	20.8g
지방	2.0g
포화지방	0.6g
콜레스테롤	86mg
탄수화물	1.7g
식이섬유	1.2g
나트륨	355mg

인증

[필수 인증]

• 싱가포르 식품청(SFA) 업체등록

- 식품의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싱가포르는 모든 식품을 수입면허를 취득 하거나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식품 수출이 가능함. 식품의 유형에 따라 수입면허 취득이 필요한 식품과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 구분됨

  *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 계란류는 수입면허(License) 취득이 요구됨
  * 가공란,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허(License) 취득 없이 등록(Registration)만 요구됨

인증명	싱가포르 식품청 업체등록	Singapore Food Agency
발행 및 검사기관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인증 취득 주체	수입자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수출자의 기술서류, 검역 당국의 검역증명서	
비용	연간 84~378 싱가포르 달러	
소요기간	1일(신선란은 5일)	
절차	신청서 제출 → 비용 납부 → 면허 취득/등록 완료	
유효기간	1년	

[선택 인증]

• MUIS 할랄 인증

- 싱가포르는 무슬림 인구의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함.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종류의 할랄 인증이 가능함.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산하 Warees Halal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함

인증명	MUIS 할랄 인증	HALAL SINGAPORE
발행 및 검사기관	국내 인증대행기관 / Warees Halal	
강제유무	권장	
제출 서류	업체별로 상이	
비용	한화 약 500만 원	
소요기간	2~4개월	
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 수수료 지급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 승인 및 인증서 발급 → 정기 감사/사후관리	
유효기간	2년	
교차인증	한국 KMF인증, 인도네시아 MUI인증, 말레이시아 JAKIM인증	

04 수출 애로사항

No.	제목	음료 제품의 당류, 포화지방 함유에 따른 영양 등급 표기 의무화 및 적용 범위 확장(추가 개정)	해당국가	싱가포르
1			관련품목	식품
			유형*	TBT

주요 내용

-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식품청(HPB)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사전 포장 형태로 판매되는 음료 및 자동 음료 디스펜서(성분의 양을 맞춤 설정할 수 없는 기계)에서 판매되는 음료에 대한 영양 등급 라벨링 조치 및 광고 금지 조치를 발효함

[주요 내용]

- 음료의 영양 등급은 설탕과 지방의 함량에 따라 A, B, C, D로 구분되며, 상세 적용 기준은 개정안의 별지 16에 규정되어 있음
  - 영양 등급 "D"인 음료는 광고를 시행할 수 없음
  - 영양 등급 "C", "D"인 음료는 판매점의 메뉴, 온라인 메뉴 등 판매 목록에 있는 음료 옆에 표시 등급을 표시해야 함("A", "B"는 선택사항)
- 조치를 미준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000 이하의 벌금이, 두 번째 또는 후속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별지 16에 규정된 설탕과 포화지방의 영양 등급 함량 기준

① 설탕 함량에 따른 등급(당 함량은 음료 100ml 당 총 설탕의 함량(g)에서 음료 100ml 당 유당과 갈락토스의 함량(g)을 뺀 값임)

등급	A	B	C	D
설탕 함량 (100mg 당 g)	1 이하	1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② 포화지방 함량에 따른 등급(포화지방 함량은 음료의 100ml 당 함량(g)임

등급	A	B	C	D
포화지방 함량 (100mg 당 g)	0.7 이하	0.7 초과 1.2 이하	1.2 초과 2.8 이하	2.8 초과

애로·건의 사항

- 싱가포르 음료 제품의 당류, 포화지방 함유에 따른 등급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나 영양 등급 표기 기준이 어려움

기타

※ 영양 등급 음료 규정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한 식품 규정 개정안 공고
(건강증진위원회)https://hpb.gov.sg/healthy-living/food-beverage/nutri-grade
(보건부)https://www.moh.gov.sg/news-highlights/details/implementation-of-nutri-grade-requirements-for-freshly-prepared-beverages-from-30-december-2023

※ 싱가포르 건강증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영양 등급 마크 이미지
https://hpb.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3-nutri-grade-marks-(feb-2023)89a713b9d465487abc9cc1c9782d883e.zip?sfvrsn=9cc25bfd_0

No.	제목	가금류 수출 시 최소 유통기한 및 포장 조건	해당국가	싱가포르
2			관련품목	가금류
			유형*	SPS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식품청은 냉장 가금류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가금류와 가금류 제품의 수의학적 조건을 수정함
- 냉장 가금류의 최소 유통기한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특정 유형의 포장 조건(가스 치환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삭제되었음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시 수의학적 조건 수정]

기존	수정
제품은 적절한 포장 조건(가스 치환 포장 방식)하에 누출 방지 포장으로 밀봉되어, 4℃ 이하에서 최소 14일의 유통기한이 있어야 함	제품은 누출 방지 포장으로 밀봉되어, 포장된 이후 4℃ 이하에서 최소 10일의 유통기한이 있어야 함

애로·건의 사항

- 한국산 가금류는 2023년 7월 19일 이후 일시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싱가포르로 삼계탕 및 닭고기 육류가 수출되고 있음. 수입 냉장 가금류의 수의학적 조건(유통기한 및 포장 조건)이 수정됨

기타

–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싱가포르 무역정책 및 수입관련 법규,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싱가포르 무역 정책 개요

- 싱가포르는 투명하고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고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등 4개 제품 외 모든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음. 다만 정상가격(Fair Market Price : 수출국 시장의 일반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여 싱가포르 내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계 반덤핑 관세법(Countervailing and Anti -Dump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싱가포르 식료품 수입 관련 법규

- 싱가포르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한 국가임.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규정을 기초로 자국 내 상황에 맞게 수정된 식품규정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Sales of Food Act와 Food Regulations의 규제를 받고 있음
-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모든 어류, 육류, 과일, 채소, 및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며, 싱가포르의 식료품 안전 요구사항은 HACCP와 국제 식품규격 위원회(Codex)의 국제표준에 맞춰져 있음

일반 수입 통관 절차 요약

- 수입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상품이 싱가포르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함.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함
  - 1단계 : 물품 도착 / 무역업 계정 및 라이센스 확인
  - 2단계 : 수입 신고 / 수입 신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3단계 : 수입부가세 등 납부/ 신고서 처리 및 수입부가세(7%), 신선식품의 경우 Import Fees 납부

- 4단계 : 물품검사 및 반출 / 검사대상 물품 검사 및 물품 반출

  * 물품반출 및 반입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에서 이루어지며, 수입부가세 등 통관 관련 각종 세금은 은행 GIRO 를 통해 자동 결제됨. 또한 세관은 반입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1. 건강 보조제

통관 보고서 요약

- 건강보조제는 싱가포르 식약처의 승인 및 라이센스 대상이 아니므로 싱가포르 식품청(SFA)의 승인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함

건강 보조제 통관 절차 상세

- 싱가포르에 건강 보조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2개의 기관에서 하기 내용을 확인해야 함.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신청, 식품청(SFA)에서 가공식품 수입 라이선스 취득, 그리고 건강 보조제 딜러는 건강 보조제를 공급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 확인 의무가 발생

1. 관세청 무역업 계정 활성화(Trade Account Activation)

   -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무역업 계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보 변경 및 종료도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

   - 필요 정보 및 서류

     ①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UEN : Unique Entity Number)

     ② 싱가포르 법인의 CorpPass

     ③ 상품 기본 정보 및 HS Codes

   - 신청절차

     ① 싱가포르 관세청에 무역업 계정 신청 시 일반적으로 1 영업일 후에 승인 결과를 받음

     ② 무역업 계정 승인 후 Cargo Clearance Permit(CCP)를 받을 수 있음

     ③ CCP에는 해당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필요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2. 가공식품 및 주방용품 수입 라이센스(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Appliances)

- 싱가포르에 가공식품 및 주방용품을 수입하려면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 관할 정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SFA) https://www.sfa.gov.sg/

- 필요 정보 및 서류

  ① 싱가포르 관세청 무역업 신청 완료

  ② 싱가포르 기업청(ACRA) 사업자 등록증(Business Profile)

  ③ 싱가포르 법인 이사의 CorpPass

  ④ Giro 신청서 : 법인계좌 정보, 은행 서명권자 서명, 법인 도장

- 신청절차

  ① GoBusiness Licensing에서 가공식품 수입 라이센스 신청(수입 상품에 대한 상세내역 및 수입업체의 정보를 기입) 및 신청 비용 결제

  ② Giro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입부가세 및 Import Fees의 자동 이체를 위해 Giro 신청서를 제출함. Giro를 신청하지 않아도 라이센스 취득은 가능하지만 향후 수입 관련 세금 미납 발생 시 해당 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상품 통관이 지연되므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음

  ③ 라이센스 취득에 1 영업일 소요되며 라이센스 승인 익영업일로부터 수입 통관이 가능함

3. 건강 보조제 확인 사항

① 독극물법(234항) 및 독극물 규칙, 약물 남용법(185항), 마약판매법(282항) 금지되는 성분 및 건강보조식품 리스트

② 인체 부위에서 추출한 성분

③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

④ 동물 전염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 성분

⑤ 멸종위기종 수출입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성분

⑥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활성물질

⑦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 목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약리학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문서화된 활성 성분

⑧ 비타민 제한 사항

영양	일일 제한 사항
비오틴	0.9 mg
엽산	0.9 mg
니코틴 아마이드	450 mg
니코틴 산	15 mg
Vitamin A(Retinol)	15 mg(5000 IU)
Vitamin B1	100 mg
Vitamin B2	40 mg
Vitamin B5(Pantothenic acid)	200 mg
Vitamin B6	100 mg
Vitamin B12	0.6 mg
Vitamin C	1000 mg
Vitamin D	0.025 mg(1000 IU)
Vitamin E	536 mg(800 IU)
Vitamin K1 / K2	0.12 MG

⑨ 중금속 제한 사항

중금속	허용 가능 용량
비소	5 ppm(5 백만불의 1 ppm)
카드뮴	0.3 ppm
리드	10 ppm
수은	0.5 ppm

⑩ 미생물 제한 사항

미생물	미생물 수(제품의 g 또는 ml 당 군집 형성 단위(CFU))
총 호기성 미생물 수	10^5 이하
효모 및 곰팡이	5×10^2이하
대장균, 살모넬라균 및 황색 포도구균	없음

* 중국 의약품에는 허용 가능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금속 함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금속 및 미생물 제한사항은 딜러 및 판매자의 의무임. 해당지침은 링크를 참조
http://asean.org/asean-economic-community/sectoral-bodies-under-the-purview-of-aem/standards-and-conformance/policy-and-guidelines

⑪ 라벨링 요구 사항

- 제품 라벨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독성을 요구함. 영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정보는 적절하고 거짓정보가 있으면 안됨. 레이블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1) 상품명

(2) 모든 활성 성분의 이름과 양

(3) 제품 표시/사용 목적

(4) 일일 복용량

(5) 사용 방법

(6) 팩 크기

(7) 배치(Batch) 번호

(8) 만료 날짜(또는 "사용 기한", "~까지 사용"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

(9) 필요한 경우 주의 라벨 또는 문구가 있어야 함

(10) 현지 제조업체 또는 현지 수입업체의 이름 및 주소

(11) 수입 제품의 제조 국가 이름

* 참고 : 성분 이름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명을 기반으로 해야 함. 성분명의 일반명 사용은선택 사항임. 광물의 경우 일반명 또는 화학명을 사용할 수 있음

* 작은 용기에 포장된 제품(예 : 단위 용량의 봉지, 블리스터 스트립) 및 라벨 공간의 제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제품 이름, 배치 번호 및 만료 날짜가 제품에 있어야 함. 전체 제품 정보는 외부 상자와 같이 함께 제공되는 외부 용기에 있어야 함

⑫ 광고 및 판촉

- 건강 보조제는 특정 의약 목적으로 표시, 광고 또는 판촉되어서는 안 됨. 여기에는 질병, 장애 또는 관련 상태의 치료 또는 예방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
- 건강 보조 식품의 광고 및 판촉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예 : 비타민과 미네랄만 함유한 제품)을 제외하고 허가 승인 대상은 아님. 제품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HSA의 CHP(Complementary Health Products) 분류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CHP의 분류를 확인
- 광고 및 판촉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포함하거나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지거나 대중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됨

2. 맥주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싱가포르 통관 절차 내 등록 요건 및 유의사항

알코올 수입 통관 절차 상세

•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식품 안전 및 수입 관리를 총괄하며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수입 전 다음 준비단계를 거칠 것을 요구함

• ① 식품 분류 사전 확인 → ②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 라이센스 취득 또는 수입허가 진행 → ③ Sales Act 및 SFA 세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식품 라벨링 요건 충족 → ④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조건 확인 후 수입허가 취득

• 싱가포르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 등록이 필요함

• 식품 분류 사전 확인

- 싱가포르 식품청의 상품 분류 : HS Code, 제품코드, Product Description, 유닛 수량으로 분류되며 본 품목의 HS Code는 22030091 또는 22030099로 분류 가능
- 이후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 라이선스 취득 또는 수입허가 진행

• Sale of Food Act 및 SFA 세부 규정 준수 여부 확인(식품 라벨링 요건)

1) Intoxicating Liquors
   - 술은 20°C에서 0.5%(v/v)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음료로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술을 지칭
   - 약효를 주장하는 알코올은 식품으로 광고, 라벨 표시 또는 판매할 수 없음

2) Ale, Beer, Lager, Porter or Stout
   - 에일, 맥주, 라거, 포터 또는 스타우트는 20°C에서 1.0%(v/v)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발효액이어야 함
   - 맥아 또는 기타 곡물과 설탕 또는 덱스트로스 또는 둘 모두를 으깨어 홉 또는 기타 무해한 식물성 성분과 함께 양조해야 함

3) Compounded Liquors
   - 혼합주는 동일한 일반 설명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주류로 구성된 주류임. 혼합주를 구성하는 각각의 다른 주류가 지리적 명칭에 대한 자격이 개별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한 복합주의 명명법에 지리적 명칭을 포함해서는 안 됨

- 주류 이름 앞에 "compounded"라는 단어가 주류 이름과 동일한 크기 및 색상의 문자로 표시되지 않는 한 혼합 주류는 주류로 표시되지 않음

• 관세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맥주에 관세 및 7% GST가 부과됨
- 현재 맥주의 세율은 알코올 1L당 S$16.00(Customs Duty) 및 알코올 1L S$60.00(Excise Duty)

• 라벨링
-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들은 Sales of Act에 의거, 식품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라벨링을 요구함
- 라벨링 내 표시사항은 영문으로 표기
-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된 식품의 경우 글자 최소 높이는 1.5mm의 영문 대문자로 식품 내용물이 명기되어야 함
- 해당 식품의 명칭, 순증량,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 관련 내용,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영양분석표의 경우 일일 권장량과 그에 따른 영양성분이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는지도 기재해야 함
- 음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입해야 함
- 국제 관행에 따라 시리얼, 유청 및 견과류를 알코올 음료의 증류액으로 사용하거나 생선 젤라틴 또는 아이소글라스 3을 맥주 및 와인의 청징제나 정화제로 상용하는 경우 라벨에 표시할 필요가 없음

자문 결과

• 앞서 명기한 HS Code, 주류 규정, 관세, 라벨링을 참조
• 싱가포르 현지에 수입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수입업체를 확보하고 있다면 싱가포르로 맥주를 통관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아이스크림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 CPB에서 아이스크림 수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싱가포르 SFA에 당사(수출자)가 직접 제품별 수입 승인을 받고자 함. CPB는 현재 아이스크림을 일본,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 또한 각 수출자가 직접 SFA 허가를 취득하였다 하며 당사에서 진행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함

• 통관에 필요한 등록 요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 요청함

아이스크림 수입 통관 절차 상세

•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식품 안전 및 수입 관리를 총괄하며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 수입 전 다음 준비단계를 거칠 것을 요구함

• ① 식품 분류 사전 확인 → ②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 라이센스 취득 또는 수입허가 진행 → ③ Sales Act 및 SFA 세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식품 라벨링 요건 충족 → ④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조건 확인 후 수입허가 취득

• 싱가포르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식품 분류 사전 확인

• 싱가포르 식품청의 상품 분류 : HS Code, 제품코드, Product Description, 유닛 수량으로 분류하며 아이스크림의 HS Code는 21050000임

• 이후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 라이선스 취득 또는 수입허가 진행

• Sale of Food Act 및 SFA 세부 규정 준수 여부 확인(식품 라벨링 요건)

1)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은 설탕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유지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식용 지방이나 기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의 냉동 조제품임
- 5%(w/w) 이상의 지방과 7.5%(w/w) 이상의 무지방 유고형분을 포함해야 함

2) 유제품 아이스크림(Dairy Ice-cream)

- 유제품 아이스크림 또는 풀 크림-아이스 또는 유제품 크림-아이스는 설탕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우유, 크림 또는 유제품의 냉동 조제품
- 10%(w/w) 이상의 유지방과 7.5%(w/w) 이상의 무지방 유고형분을 포함해야 함

3) 우유 아이스(Milk-ice)

- 유지방 2.5%(w/w) 이상, 무지방 유고형분 7.5%(w/w) 이상의 냉동 식품을 말함

• SFA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특정 유형의 식품에는 종류,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른 조건과 요건이 적용되므로 싱가포르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SFA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예를 들어 육류 및 계란은 공인된 해외 작업장에서만 수입할 수 있음
- 유제품은 등록 시 고위험군으로 간주하여 수입 전 SFA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관세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 의거, 기본 세율은 0%

• 라벨링

-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Sales of Act에 의거, 식품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라벨링을 요구함
- 라벨링 내 표시사항은 영문으로 표기
-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된 식품의 경우 글자 최소 높이는 1.5mm의 영문 대문자로 식품 내용물이 명기되어야 함
- 해당 식품의 명칭, 순증량,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 관련 내용,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영양분석표의 경우 일일 권장량과 그에 따른 영양성분이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는지도 기재해야 함
- 음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입해야 함

• 자문 결과

- 싱가포르 기준에 맞는 위생증명서 발급, 라벨링 작업 등이 선행되어 수입허가 요청 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여겨짐